

## 「예술활동증명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용역」 입찰 재공고문(긴급)

###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공고번호: 제2021 - 105호
- 나. 입찰건명: 예술활동증명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용역
- 다. 사업내용: 제안요청서 참고
- 라. 수행기간: 계약체결일~2021. 12. 31.(금)
- 마. 예산금액: 금124,300,000원(금일억이천사백삼십만원, 부가가치세 포함)
- 바. 입찰방법: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
- 사. 계약방법: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
 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
  -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”(기획재정부 고시)
  -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

### 2. 입찰 참가등록

- 가. 가격입찰(전자) 제출기간: 2021. 11. 10.(수)~2021. 11. 15.(월), 11:00까지
- 나. 가격투찰: 조달청 나라장터(전자입찰)
- 다. 제안서 제출마감: 2021. 11. 15.(월), 11:00까지(마감일 제외 5일)
- 라. 제출방법: 방문접수(※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)
- 마. 제출장소: 한국예술인복지재단(이하 '재단') 경영지원팀
  -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-15 소호빌딩 2층
  - \*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
  - \* 가격제안서는 서면제출하지 않으며,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.

### 3. 입찰 참가자격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)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
-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
- 사업자는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(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, 업종코드: 1468)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
-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-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\*으로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의2 제2항 및 「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(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(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“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: 없음”으로 확인)만 입찰참가 가능

\* 본 사업은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각 단위사업기준으로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함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(경쟁입찰 참여자격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”(중소벤처기업부고시)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(<http://smpp.go.kr>)에 “직접생산 확인”(전산업무(소프트웨어)개발 -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, 세부품명번호: 8111189901)에 등재된 자
-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 제24조의2(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)에 따른 「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을 준수하여야 함

#### <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>

대상업체	사업금액의 하한
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	80억원 이상
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	40억원 이상
‘중견기업’	20억원 이상

※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 된 사업자로써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중소기업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 ‘중견기업’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. (증빙서류 :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)

·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,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함

○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

- 공동수급을 허용하며,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)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,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
-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,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% 이상으로 하여야 함[「공동계약운용요령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」 제9조제5항 참조]
-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하며,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(공동이행방식)는 G2B를 통해 등록
-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 제5조2항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간의 공동수급 금지

○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

- (하도급 사전승인)하도급의 경우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 제20조의3 및 「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- (하도급 비율제한)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. 다만, 같은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하도급 계획서 제출)하도급을 하려는 경우, 입찰 및 계약체결시 「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」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- (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)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, 「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」에 따른 <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>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,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. 다만,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

- (공동수급체 구성)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,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(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)
-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
- (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)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SW기술자평균임금 및 SW대가산정가이드 기준에 따라 산정함
- (하도급 대금 지급기준)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 제19조 (하도급 대금지급 등)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SW기술자 평균임금(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공표)의 100%,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% 이상으로 함

#### 4.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방법: 제안요청서 참고

#### 5. 제출서류: 제안요청서 참고

#### 6.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

- 가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5/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(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)을 입찰공고일 마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나.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(계약 장소: 한국예술인복지재단),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#### 7. 입찰의 무효

- 가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, 동법 시행규칙 제44조,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- 나.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다.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
- 라.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
## 8. 기타사항

- 가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,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,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,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.
- 다.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·보완할 수 없고,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라.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마.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바.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(제512호, 2020. 9. 24.)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.
- 사.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9. 문의처

- 가. 입찰(행정사항) 관련: 경영지원팀 장하루 주임(☎ 02-3668-0223)
- 나. 용역(사업)내용 관련: 정보화담당 이준희 과장(☎ 02-3668-0225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10일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